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의안번호 : 제1138호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 안 사 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원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해주도록 한 규정이 있음. 그러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1) 제로페이 사업 추진실적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5월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산하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조례 19건, 규칙 1건, 지침 1건)을 개정하였으며,
 - 5월에는 할인시설이 83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나, 9월말에는 165개로 확대시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제로페이 월별 할인 시설수〉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설 수(누계)	83	95	100	104	165

- 지난 4월 제로페이 할인 내용을 담은 동 조례 개정안 심사시에 [별표 2]에 언급된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 말고 계약방식, 운영방식,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설을 선별하도록 하였으며,
 -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동 조례로 적용하는 제로페이 할인 시설을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전체의 44%이며, 제로페이 할인 건수는 전체의 46%으로 나타났음.
 -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5천원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할인건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로페이 운영 실적 〉

실국명 (시설명)	시작일	대상 및 할인율	누계(5월~9월)					
			전체 결제		제로페이 결제		제로페이 할인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서울시 총계(시설수 165개)			4,498,495	48,177,349,874	231,002	6,150,758,762	222,782	770,245,37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시설			1,113,813	4,128,156,751	101,789	336,273,560	101,789	144,125,936
			25%	9%	44%	5%	46%	19%
1	서울식물원	19.5.2 입장료의 30%	267,716	1,149,381,490	62,164	204,044,400	62,164	87,456,299
2	서울대공원	19.5.3 입장료의 30%	846,097	2,978,775,261	39,625	132,229,160	39,625	56,669,637

2) 1년 할인 연장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중이며,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따릉이는 반값,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은 30% 할인”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 할인혜택은 각 조례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제로페이 광고에는 할인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예산은 한번 증가하면 줄어들기 어렵다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혜택은 제공한 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당초 6개월간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